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계룡시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과 소속 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룡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룡시 소속 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의회의원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감사업무담당으로 사무직원은 실무자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